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및 보호·지원대책 수립 등〉
■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59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및 보호·지원대책 규정 마련 등	3
※ 참고자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4

I. 제안경위

2026년 1월 9일 김위상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극한의 고열·한랭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실질적 건강장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나 보호·지원, 실태조사 규정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등에 보호·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및 보호·지원대책 규정 마련 등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 법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46조의2 및 제4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u>취약계층</u>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3. ----- ----- ----- ----- ----- ----- --산업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 -----.
14. ~ 17. (생략)	14. ~ 17. (현행과 같음)
<u><신설></u>	1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8.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⑨ (생략) <u><신설></u>	<u>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u>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u> <u>나. 유해광선·고열·한랭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 근로자</u> <u>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층</u> 제3조(기본원칙)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u> 4. ~ 8.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현행	개정안
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1. (생략) ③ ~ ⑥ (생략)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9. (생략) ③ ~ ⑦ (생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u>국토교통부장관</u>,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u> 6. ~ 11.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u> 4. ~ 9.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 -----<u>고용노동부장관</u>, <u>국토교통부장관</u>-----

현행	개정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생략) ⑤ ~ ⑨ (생략) <u><신설></u>	----- ----- 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u>제46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u> ① 국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u>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u>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u>기후위기 취약계층</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군·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3조 및 제4조1)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저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의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과 관련하여 기후정의 추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

-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음.

또한 현행법 제10조²⁾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기본계획에 맞춰 시·도계획, 시·군·구 계획³⁾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기본계

-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획 등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강화된 보호·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여 이상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등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 및 국가기본계획 등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정책 설계 전제조건으로 두고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에 담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⁴⁾에서 이미 수립·시행하고 있으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므로 중복 행정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른 기후 취약계층 지원 사항]

8 [기후 취약계층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회복 안전망 구축]

◆ (현황) 극한 기상(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기후 취약계층 경제적·건강 피해 집중
 (추진방향) 실태조사 기반으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인프라서비스) 확대

①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반 맞춤형 지원 기후부, 행안부

- (조사)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기후3개 시범)를 전국 확대하여('26~)
 →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효능감 제고, 지자체 대책에 반영
 * 연령, 소득, 지역 등 요인 복합적으로 고려 → 피해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 정책 반영
 ※ 취약계층 정의, 실태조사, 정책 지원 등 법제화 추진
- (주거 환경) 재해취약주택*에 침수방지시설(경보장치, 차수판 등) 등 설치, 곰팡이 등 환경유해인자 차단을 위한 실내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추진
 * 시설 지원과 더불어 공공·민간 임대 이주 지원 등 병행(연간 1만 가구)

②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기후부

- (기후보험) 폭염 시 야외근로자의 생업·생계 피해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 추진('26~, 시범·확대 검토)
 * 별도의 손해 사정 없이 일정 지표(기온 등) 도달 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 (바우처) 에너지바우처(연 36.7만원) 지급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 확대*^(25년130만→30년150만가구)
 * 에너지복지 실태조사('26~'27) 기반으로 에너지 빈곤지표 도출 →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③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기후부, 질병청 등

- (평가) 제2차 기후보건 영향평가('26년) 시 평가지표를 확대(31개 → 70여 개) 하고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통해 기후보건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 (이용권) 건강 민감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범위 확대^(기초어린이 → 개설퇴산부 등 소 민감계층 대상)
 * 환경성 질환 예방 관련 상품서비스 및 실내환경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 (심리) 기후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현장 대응인력 등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 안정 지원*
 *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 마음안심버스(50대) 운영 등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일한 취지의 법안⁵⁾이 2025년 12월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바 해당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김위상의원안과 대안 내용 비교]

구분	대안	김위상의원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나. 유해광선·고열·한랭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
국가·지자체 책무	○	○
기본계획 등에의 반영	-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 추가
위원회 위원 변경	-	- 고용노동부장관 추가 ※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既포함
기후대응기금 용도 추가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	○
지원대책 마련 규정	○	○

5) (DD207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